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3. 4. 오세희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세희의원)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5, 제25조의9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과 제3자

를 동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매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안 제26조의 5).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제26조의6제1항).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0월과 11월에 지류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 가맹점(449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를 훼손한 22곳을 고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바,

종합 개선방안에는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재판매(상품권 사용자와 상품권 매매업자 간 거래) 금지,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금지, 상품권 구매대행(불법매집) 금지 및 상품권 부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 등 상품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반영한 것으로,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안 제26조의5제1항제3호는 개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용자로부터 수취한 상품권이 도매시장 등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의 불법적인 현금화 문제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6조의5제1항제4호는 개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매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 없이 구매대행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

권을 수취하여 환전차익을 취하는 행태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셋째, 안 제26조의5제4항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상품권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6조의9 신설).

개정안에 따라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득과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되면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 부당이득금 현황 및 현행법에 따라 개별가맹점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성 및 제재의 실효성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2조제2항 신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경우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현행법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브로커 조직 등을 통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권칠승의원, 김위상의원, 김원이의원, 오세희의원, 장철민의원, 이종배의원, 위성곤의원, 이재관의원, 박용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